

스페셜올림픽코리아 기금 관리·운용에 관한 규정

2013. 04. 12. 제정

제1조(목적) ① 이 규정은 정관 제53조에 의거 한국스페셜올림픽 발전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기금의 관리·운용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한국스페셜올림픽위원회의 이사 3인, 감사 1인, 사무총장과 위촉위원 4인으로 한다.

③ 위촉위원은 한국스페셜올림픽위원회 회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취득하고 금융, 재정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 한 경력이 있는 자
 2. 기금의 운용과 관련된 분야의 경력이 1호의 기준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 ④ 위원회의 간사는 기금 관리·운영을 담당하는 직원으로 한다.

제3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한국스페셜올림픽위원회 회장이 임명한다.

② 위원장은 회무를 통괄한다.

③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사무총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의결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1. 기금 운용 계획안의 수립
2. 기금 운용 계획 주요 항목지출 금액의 변경
3. 기금 결산보고서의 작성
4. 자산운용 지침의 제·개정
5.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며 부의하는 사항

제5조(회의 및 소집)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 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2월, 6월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 회의는 다음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위원 과반수의 위원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을 때

3. 한국스페셜올림픽위원회의 감사로부터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④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간사로 하여금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에 관하여는 회의 개최 3일전에 통지할 수 있다.

⑤ 심의에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안건과 관련된 전문가나 이해관계 및 관계직원을 출석 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에서 제척된다.

1. 당해 심의 안건에 대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당해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연구·용역 등을 수행하는 경우

3. 당해 심의 결과로 인하여 이해 당사자가 되는 경우

4. 기타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당해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7조(소집의 특례) ① 회의의 소집요구가 있음에도 위원장이 소집을 기피함으로써 회의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한국스페셜올림픽위원회 회장 승인을 받아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제 1항에 따른 회의의 운영을 위하여 사무총장은 위원장의 역할을 수행한다.

제8조(성립 및 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 결정권을 가진다.

③ 심의 안건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안건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이 경우 의결에 참석하지 못하는 위원은 재적위원 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9조(부의안건 및 절차) ① 회의 부의안건은 의결사항과 보고사항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② 의결사항은 위원장 및 위원이 제안한다.

③ 보고사항은 위원장, 위원 및 한국스페셜올림픽위원회의 감사가 제안한다.

④ 의결사항을 제안하고자 할 경우 의안을 작성하여 위원회 개최 2주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간사는 위원장의 회의 개최 결정을 받아 7일전까지 부의안건과 함께 모든 위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제안 설명 등) 위원장은 제안 안건에 대하여 관계 임·직원으로 하여금 제안 설명 및 질의 답변에 응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서면결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이 없거나 경미한 사인에 대하여는 서면 결의를 받아 처리할 수 있다.

② 서면 결의에 따라 의안을 처리하고자 할 때에는 부의안건과 함께 서면 심의를 한다고 사항을 통보하고 위원은 서면 결의표에 찬성, 반대의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의결을 재적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의결사항의 의결여부의 대하여는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의사록) 간사는 심의 회의 건만을 기록한 의사록을 작성하여 참석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실비지급)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2013.04.1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